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실태와
지원시설 연계의 과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실태와
지원시설 연계의 과제**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유 지 웅

목 차

I. 서론	1
II.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 법률, 지원체계	3
1. 청소년 성매매 관련 개념	3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6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3.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체계	9
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0
나. 청소년지원시설	13
다. 가출청소년쉼터	14
III. 청소년 성매매 경험을 조사	15
IV.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실태와 개선책	22
1. 경찰 단계의 사법처리	22
가.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22
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후조치	26
2. 검찰단계의 사법처리	27
3.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책	30
가. 초기수사단계에서의 조기개입의 필요	30
나. 효과적인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보완	33

V.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시설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책	35
1. 지원시설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35
2.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연계의 강제성과 일방성	36
3. 사법기관의 통보에 의한 재활교육 참여자 감소	38
4.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의 부족	41
VI. 맺음말	42

<표 차례>

<표 1>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10
<표 2> 청소년 지원시설 소재지 및 시설명	13
<표 3>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성매매 경험을 조사결과	17
<표 4>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서 성매매 청소년 가출여부	19
<표 5> 가출경험을 조사	20
<표 6>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	23
<표 7> 대상청소년 사후조치 현황	26
<표 8>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통보된 교육대상 인원	38

<그림 차례>

<그림 1> 교육대상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절차	12
-----------------------------------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근래까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은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성 당사자였다. 윤락여성이라는 용어는 당시의 사회적 시각을 반영한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에서 해당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처벌대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2000년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고, 그 대신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갈수록 높여나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과 예방, 피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와 더불어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탈성매매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작동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되어 사법처리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회적 지원체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과

제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체계에 제대로 연계되기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법적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현 시스템 내에서 피해 청소년을 사회적 지원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개선책들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관련된 개념들과 관련 법률, 사회적 지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후, 본론적으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대상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검토하고, 사회적 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책들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Ⅱ.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 법률, 지원체계

1. 청소년 성매매 관련 개념

일반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과 성인 간에 금품, 돈, 물질적 혜택을 대가로 성행위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¹⁾ 성인 남성이 여자 청소년에게 어떠한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원조교제’라는 사회현상이 실제적으로는 성인 남성과 여자 청소년의 성적인 거래행위로서 엄연한 성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조’와 ‘교제’라는 단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²⁾ 대체 용어로서 ‘청소년 성매매’가 사용되고 있다. 원조교제의 대체 개념으로 등장한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과 여성 청소년의 성적 거래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내 ‘청소년 성매매’는 지속적인 데이트 과정을 포함했던 일본의 원조교제와 달리,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만남부터 성매매까지 ‘일회적’으로 행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연주(2010)는 청소년 성매매를 “성인 남성과 십대 여성의 일회적인 개인적 성매매”로 규정하고 ‘조건만남’과 같은 의

1)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등장했다. 일본의 중년 남성이 삶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자 청소년을 만나 데이트(식사, 섹스를 포함하여)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형태의 원조를 하는 데서 나온 용어이다.

2) 신미식, 10대 여자청소년 원조교제(성매매)의 유형화와 대처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14면.

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³⁾

그러나 최근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또래 사이(즉,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서도 일어나고, 남성 청소년과 여자 성인 사이에서도 일어나며, 드물게는 남성 청소년과 남성 성인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은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보는 관점과 이론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중간매개자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고, 업소가 없이 중간매개자만을 통해서 성인 남성과 여자 청소년의 성거래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형태를 반영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화는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은 성을 파는 청소년과 성을 사는 성인간에 동등한 계약관계가 이뤄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청소년과 성인간의 기본적인 불평등 관계를 반영하여 ‘청소년 성매수’라는 용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성매매의 책임을 전적으로 성인에게 전가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성매매 책임을 면제시키며 그들의 ‘행위성’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글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개념은 법률적 개념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단지, 좁은 의미에서

3) 김연주, 신빈곤층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자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0, 45면.

성인 남성과 여자 청소년의 일회성 성매매를 가리킬 때에는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가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적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성매매 행위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성매매 청소년’으로 칭한다.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 등의 용어 구성과 같은 맥락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구별되는 특징과 상태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즉, 성매매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성매매 행위를 하는 청소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성매매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성매매 행위를 하는 청소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성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적극적 주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에 어긋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 현상 속에서 청소년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 목적과 정신에 따라, 이 글에서는 대상 청소년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반영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⁴⁾ 더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⁵⁾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성매매 피해 청

4) 선진국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지만,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해야 하며 성인과 차별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이러한 관점의 근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며, 학대 및 착취의 희생자이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성매매에 진입하기 전부터 경제적 궁핍은 물론 성적 괴롭힘, 교육적 박탈, 가정폭력, 신체적 성적 폭력 경험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홍봉선·남미애,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2009, 12면).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법처리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법률적 개념으로서 '대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혼용할 것이다.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인 간의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⁶⁾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인의 성범죄를 규제하고 피해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여러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을 처벌하는 한편, 성매매와 성폭력의 대상과 피해자로 존재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른 성매매 규제 법률과 구별되

6) 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는 부분은 처벌대상에 있다. 이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은 처벌하고 있지만(제7~14조), 대상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제26조 제1항).⁷⁾ 이에 따라 대상 청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제27조 제1항),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상담과정 이수명령을 받는다(제27조 제2항).

이 법률의 제25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27조 소년부 송치, 제28조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규정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단계에서는 발견과 수사업무, 검찰단계에서는 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수강명령 혹은 보호처분 여부 결정,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해자 성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2010년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성인은 규제하되, 그 대상이 된 청소년은 건강한

7) 이 규정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성인과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현행 소년법이 천명하고 있는 소년보호주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8) 2010년 개정안에 포함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영국의 성범죄법이 처벌하고 있는 그루밍(grooming)에 대한 처벌과 인터넷 루어링(internet luring)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처벌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는 행위가 처벌 가능해졌다.

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0조 1항)<개정 2010.4.1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2항)<개정 2010.4.15>.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사회 현실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괴리를 나타낸다. 사회 현실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행위의 자율성’을 행사한 범법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 청소년의 행위 자발성 여부와 성매매의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성매매가 향락 아르바이트의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 한편,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성매매 참여가 학대와 빈곤 등의 생활경험에서 길러진 낮은 자존감에 의해 이뤄진 참여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소년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즉, 이 법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규정(제3조)으로 명시하고 있다.¹⁰⁾

10) 제3조(국가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

이 법 제5조에서는 지원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인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지원시설이 있으며,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서는 지원시설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3.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체계

우리나라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등은 그러한 지원 시스템으로서 대표적인 형태이다. 아래 <표 1>은 각 시설들의 근거법, 설립목적, 특징과 주요 기능, 이용대상, 시설수 등을 비교한 것이다.

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1>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지원시설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구, 보건복지가족부 업무)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구, 보건복지가족부 업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근거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	치료, 재활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 차단 및 자립지원	가출 청소년 보호,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 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
특징 및 주요 기능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중앙업무 이관(2011).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에 연계하여 사후 관리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무료숙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상담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연계하여 사후 관리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숙식·보호·상담 제공,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진학교육 지원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연계하여 사후 관리
이용대상	19세 미만 성매매 피해 청소년	9-24세 가출청소년	19세 미만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시설수	전국 11개소	전국 85개소(단기 중기 장기 포함), 이 중 39개소(45.9%)가 청소년 대상	전국 13개소

출처: 이나영, “‘청소년 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원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11, 24면.

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¹¹⁾ 검사로부터 교육과정 이수 명령을 받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비롯하여 경찰로부터 통보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위탁기관이다. 지난 2006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수강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지정된 이후,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¹²⁾ 교육방식은 실무자와 참여자들이 5박 6일 동안 함께 숙박하면서 심리치유, 성교육, 진로탐색, 자존감 향상, 탈성매매 여성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받고 여기에서 형성된 실무자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1년간 사후관리를 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탈성매매를 지원한다.¹³⁾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성매매 대상청소년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연계되는 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경찰에서는 대상청소년이 발견되는 대로 여성가족부에 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여성가족부는 이 명단을 받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넘긴다. 검찰에서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대상청소년 중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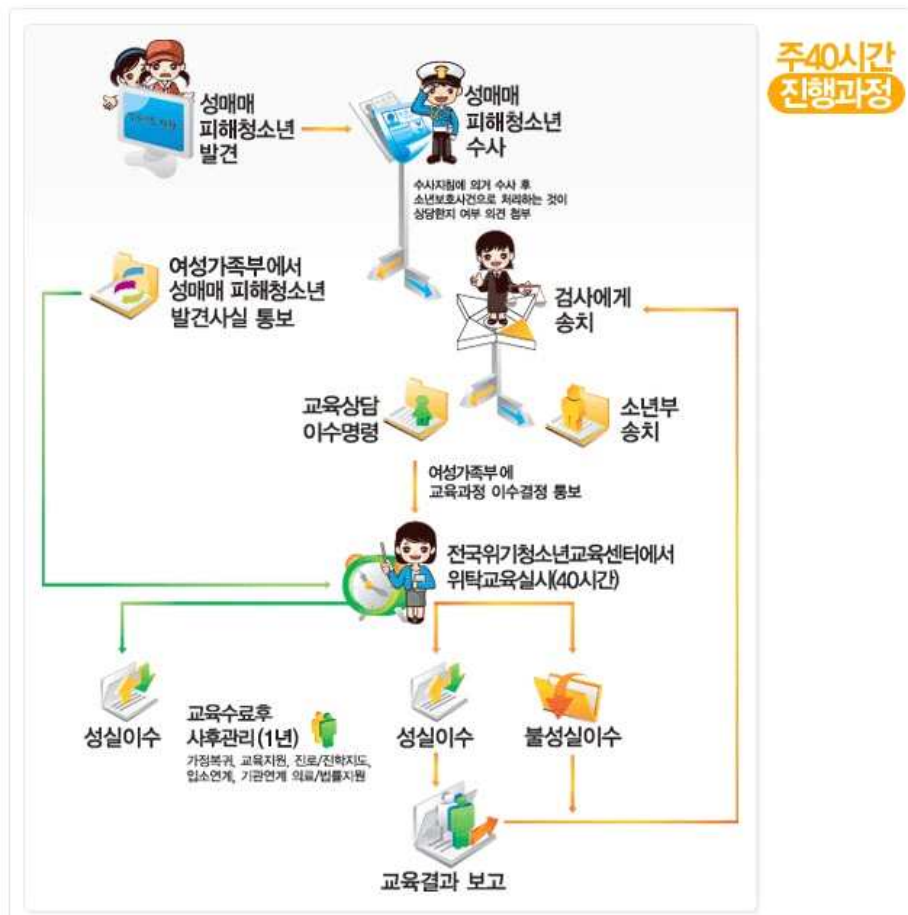
11) 제27조(소년부 송치)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12) 국내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재활 교육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창원 여성의 집에 위탁하여 시범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검사의 교육수강 명령을 수행할 교육센터로서 5개의 위탁 교육기관이 지정되었다(중앙, 대전, 광주, 부산, 맥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07년에는 서울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009년에는 인천, 강원, 대구, 평화(서울 소재)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010년에는 경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011년에는 전북 위기청소년 교육센터가 추가 지정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해 오다가,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위탁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3)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대상청소년 위탁교육사업 결과보고서, 2010, 33-36면.

이수 명령을 내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를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넘긴다.

<그림 1> 교육대상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절차



출처: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대상청소년 위탁교육사업 결과보고서, 2010, 9면.

나.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성매매와 자립지원을 위한 숙식제공,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 자활지원, 취업 정보제공, 진학 교육 및 취업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 입소는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인계를 받은 경우 등이다. 청소년 지원시설의 이용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입소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9세까지 지원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2011년 2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지원시설은 전국에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별로 보호인원은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20인 미만이다.

<표 2> 청소년 지원시설 소재지 및 시설명

지역	개소	시설명
서울	5	평화의 샘, 씨튼해바라기의 집, 유프라시아의집, 우리들쉽자리,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부산	2	구세군 셸리흙,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
대구	2	가톨릭 푸름터, 수지의 집
광주	1	푸른 꿈터
대전	1	우리청소년여쉽자리
경남	2	경남 범숙의집, 로템의 집
계	13	

출처: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4_03.jsp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

다. 가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쉼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출 청소년을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숙식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일시쉼터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일시보호하고, 단기쉼터는 집을 떠나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 단기보호하며,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중장기 보호한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현재 전국 85개소(단기 중기 장기 포함)가 운영 중인데, 이 중 39개소(45.9%)가 청소년녀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쉼터의 보호인원은 단기쉼터는 25명 이내이고, 중장기쉼터는 7-10명 이내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엄격한 의미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이라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이다. 이러한 쉼터의 특성 때문에 쉼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못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청소년 성매매 경험을 조사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관련한 일차적인 관심은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규모이다.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은 어느 정도일까? 성매매 청소년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산출되고 있지 않다. 성매매 청소년 실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산출되는 통계는 경찰에서 집계하는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표 5>)이 있으나, 이 통계는 성매매 처벌 관련법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숫자, 즉 경찰의 단속활동에 포착된 성매매 청소년의 규모를 보여줄 뿐이다. 사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경찰의 단속활동에 포착되지 않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규모는 집계되고 있지 않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표본을 산출하여 성매매 경험 여부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가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이 조사는 1999년에 (구)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당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하여 조사하였다가,¹⁵⁾ 지난 2005

14) 청소년 성매매 현황 및 실태를 추정하는 한 방식으로서, 일정 기간의 경찰 성매매 단속기간 동안 전체 성매매 사범에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연구자는 경찰청이 지난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74명의 성매매 사범이 단속되었고, 그중 891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이었다는 점에서 성매매 사범 5명 중 1명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기도 한다.(이나영, 앞의 논문, 2011, 16면.)그러나 이 결과가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전체 성매매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경찰의 단속기간은 학생들의 겨울방학기간으로서, 경찰에서는 매년 2차례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 성매매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즉, 이 기간의 단속은 청소년 성매매 단속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결과가 전체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15) (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전신이다. 2차 조사는 2002년, 3차 조사는 2005년에 이뤄졌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전신이다.

년 3차 조사부터는 전문 조사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이다. 이 조사의 특징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과 소년원,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두 집단간에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7년 조사부터는 이 두 청소년 집단의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이 조사되고 있어서, 최근 2010년 조사까지 4년간에 걸친 청소년 성매매 경험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0년 조사의 경우, 일반청소년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16,572명, 위기청소년은 1,972명(전국 소년원, 쉼터, 보호관찰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실태조사에서 ‘조건만남’ 경험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¹⁶⁾, 일반 청소년의 0.4%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즉,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0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셈이다.¹⁷⁾ 한편, 위기청소년(소년원에 재소 중이거나, 가출하여 청소년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1,972명 가운데 4.8%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즉, 위기 청소년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소년원과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를 구분하여 보면, 소년원에 재소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은 7.1%, 쉼터 청소년은 2.8%, 보호관찰소 청소년은 2.6%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 조사에서는 조건만남 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2008)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 접촉방법은 인터넷 채팅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93.6%, 이동통신 0.2%, 아는 사람 소개 3.2%, 길거리 유인 0.2%, 업소 알선 1.1%, 기타 1.7%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거의 대부분(95% 이상)은 조건만남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의 조건만남 경험을 조사는 청소년 성매매 경험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32면).

17) 2010년 우리나라 중학교 재학생수는 1,974,798명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1,962,356명이다. 전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0.4%는 15,700여명 정도이다.

〈표 3〉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성매매 경험을 조사결과(단위: %)

조사연도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2007	0.6	1.9
2008	0.7	6.4
2009	0.3	2.1
2010	0.4	4.8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2007-2010)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로서 표본사례수가 방대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2007년부터 해마다 성매매 경험을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추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험을 수치가 낮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률 수치를 보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험 여부를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성매매 경험은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을 받을 수 있는 질문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익명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에서는 직접적으로 경험 여부를 묻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또래집단의 규모를 물어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후자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보다 훨씬 높은 성매매 경험률 결과를 보여준다. 황순길 외(2001)의 연구에서는 6대 광역시 및 경기지역의 38개 남녀 중·고등학교 50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의 1.8%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또한 고성

18) 황순길 외,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청

혜(2002)는 소년원 6개소와 중학교 3개, 인문계 고등학교 3개, 실업계 고등학교 4개 학교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성매매 경험율을 조사하였는데, 성매매 경험 비율이 1.4%로 나타났지만, 같은 반에 성매매에 성매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9.9%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¹⁹⁾ 이러한 조사결과들이 2000년대 초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최근 청소년 성매매 경험율은 청소년 위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에서의 경험율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일까? 청소년 성매매 추세는 지난 2007년 이후 연도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 위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 조건만남 경험율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경험율의 편차가 다소 있어서 추세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조건만남 경험율은 2007년에는 1.9%로 조사되었는데, 2008년에는 6.4%로 급증하고, 2009년에는 다시 2.1%로 급감하였다가 2010년에는 다시 4.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기청소년 성매매 경험율의 경우 조사치의 결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추세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일반청소년의 경우만 본다면, 최근 성매매 경험율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7-2008년 0.6~0.7% 수준이던 성매매 경험율은 2010년에는 0.4%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다.

청소년 성매매 경험율 추세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가출청소년 발생추세이다. 최근 가출청소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가출청소년 집단이 성매매 청소년의 인적 풀(pool)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년상담원, 2001.

19) 고성혜, 청소년 성 비행의 문제점과 그 대책, 통일로, 제8월호, 2002, 75-80면.

보여주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성매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이 실제 성매매 범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표 4>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서 성매매 청소년 가출여부

	6차	8차	10차
가출	170(45.9%)	351(49.6%)	410(53.2%)
미가출	200(54.0%)	356(50.4%)	360(46.8%)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보고서(6차, 8차, 10차)(2004~2006).

주1)8차 보고서에서 가출 여부가 분명치 않은 미상자 146명, 10차 보고서에서 미상자 152명은 백분을 계산에서 제외함.

<표4>는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제 6차, 8차, 10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가출여부 조사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2004년에 발표된 6차 자료에서 조사대상에 포함된 성매매 청소년 중 가출상태에 있었던 성매매 청소년의 비율은 45.9%였다. 그런데 2005년에 발표된 8차 자료에서는 49.6%로 높아지고, 2006년에 발표된 10차 자료에서는 53.2%로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에서 가출 청소년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가출청소년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성매매 청소년에서 가출 청소년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은 청소년의 성매매 범죄 예방 활동이 가출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홍봉선·남미애(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 3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82.7%는 성매매 경험 이전에 가출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첫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기는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해서’(52.8%)였다. 또한 탈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로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49.6%)였다.²⁰⁾ 청소년의 가출상태는 가족이나 학교로부터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가운데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과 금전적 필요에 따라 성매매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즉, 가출청소년의 규모 확대는 성매매 청소년 집단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공식통계로 보더라도, 지난 2007년과 비교해서 2009년 가출청소년 발생 건수는 12,240건에서 15,118건으로 증가 추세이다.²¹⁾

<표 5> 가출경험을 조사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2007	12.1	59.2
2009	11.6	72.6
2010	13.7	73.0

출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2007-2010)

지난 2007년, 2009년, 2010년 3개년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에서 일반청소년의 가출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7년에는 일반청소년 12.1%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²²⁾ 2009년에는 11.6%,²³⁾ 2010

20) 홍봉선·남미애, 앞의 보고서, 2009, 54~57면.

21) 경찰청, 경찰백서, 2010.

22)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 368면.

23) 여성가족부, 2009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 2009, 221면.

년에는 13.7%²⁴⁾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에서 집계한 가출청소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에서 전국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서 가출경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가출청소년 규모의 확대는 성매매 청소년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사에서의 성매매 경험율 조사 결과 추이, 그리고 가출청소년 발생 추이로 볼 때, 최근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4) 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 2010, 213면.

IV.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실태와 개선책

1. 경찰 단계의 사법처리

가.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단속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경찰이다.²⁵⁾ 경찰에서는 신·변종 유흥업소 등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는 한편,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인터넷 채팅과 조건만남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 및 사이버 수사대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조건만 제시되고, 실제 거래는 더욱 사적인 일대일 대화나 쪽지, 개인 메일 등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어서 단속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활동은 일반 성인에 대한 성매매 단속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검거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25)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수사활동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소관업무이다.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다른 강력사건과 병합되는 경우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원칙적으로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수사활동은 여성청소년계의 소관업무이다(부정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제3권, 2010, 25면).

〈표 6〉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

구분	검거인원	조치		구분		
		구속	불구속	성매수자	업주등관련자	대상청소년
2005	1,946	295	1,651	1,611	305	30
2006	1,745	149	1,596	1,502	183	60
2007	2,582	126	2,456	1,835	242	505
2008	2,112	81	2,031	1,464	196	452
2009	2,182	125	2,057	1,543	264	375
2010	1,345	56	1,289	972	164	209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지난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6년 동안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을 보면, 성매수자, 업주, 대상 청소년 등 검거인원은 1,300명 선에서 2,600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 2,582명으로 가장 많은 검거 실적을 나타낸 반면, 최근 2010년에는 1,345명이 검거되었다. 각해 청소년 성매매 단속 실적을 통해서 성매매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검거실적이 성매매 발생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검거실적은 성매매 발생 실태 추세와는 상관없이 경찰 자체의 단속역량과 단속환경의 결과이기 쉽다. 단속이 자주 이뤄지거나, 단속역량이 충분하고 단속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검거실적은 높아지기 마련인 반면, 사회적 이슈의 변화에 따라 단속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단속 환경이 어려워질 때면, 검거 실적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지난 2010년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에는 아동성폭력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심각한 사안의 등장하면서 여성청소년계의 한정된 단속역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단속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 의사를 보이거나 유인하는 행위(Grooming or Internet luring)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 성 구매자들은 경찰의 단속활동을 빗겨나갈 수 있는 더욱 은밀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매매 당사자들의 접속 경로는 더욱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 경찰의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을 맞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 성매매 단속 대상의 증감 추이를 볼 때, 성매수자는 매해 1,500명 안팎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대상청소년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100명 이하였는데, 2007년에는 500명 선으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010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상청소년 검거 실적으로 성매매 청소년의 규모 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이다. 대상 청소년 검거 실적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속 환경의 변화나 수사지침의 변화이기 쉽다. 2006년 60명이던 대상청소년 검거 건수가 2007년에는 50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대검 수사지침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06년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검의 성매매 청소년 수사지침이 바뀌고 대상청소년을 모두 입건 조치하도록 한 것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대상청소년의 검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성매매 청소년 규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실적은 단속 환경 요인 외에도 단속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단속활동이 더욱 강화되거나 법률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효과적인 단속환경이 주어진다면 청소년 성매매 단속은 새로운 계기를 보이게 될 것이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최근 청소년 성

매매의 성격 변화는 업소 단속을 통한 단속방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개인형 성매매’에 맞는 단속방식이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청소년 성매매 사건 수사는 기획수사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²⁷⁾ ‘조건만남’이 일어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건만남 의사를 밝힌 성매매 청소년에게 성매수 성인처럼 접근하고,²⁸⁾ 성매매 청소년이 최근 성매매 거래를 하였던 상대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성매수 성인의 통화기록 열람과 이동장소 확인을 통해 성매수 성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획수사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성매매 사범 단속사건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합법적인 수사방식으로서 인정된 바 있다.²⁹⁾ 인터넷 공간에서 ‘쪽지’ 교환이나 ‘일대일’ 대화 형태로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청소년 성매매 거래를 수사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수 있으려면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관련 법에 신설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³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성매매 단속은 ‘기획수사’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6) 이런 점에서 최근 청소년 성매매는 전통적으로 성매매업소를 통해서 이뤄지던 ‘업소형 성매매’와 구분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의 조건만남을 통한 ‘개인형 성매매’로 분류된다.

27) 홍봉선·남미애(2009)의 연구에서 심층면접대상자인 실무 경찰관의 심층면접 내용(홍봉선·남미애, 앞의 보고서, 2009, 99면).

28) 부정주, 앞의 논문, 2010, 26면.

29) 지난 2010년 3월 강북서 경찰관이 강북구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여성을 단속하고 여관주인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한 것과 관련하여, 여관주인은 경찰이 단속실적을 올리려고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단속은 적법했다”며 원소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함정수사란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락을 써 범죄를 유발하게 해 검거하는 것인데,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10. 5.17일자)

30) 성윤숙·박병식 등(2009)은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법 제도적 대책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 근거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성윤숙·박병식,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2009, 323면).

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후조치

<표 7> 대상청소년 사후조치 현황

구분	계	검찰 송치	쉼터 등 연계	보호자 인계
2010년	209	109 (52.2%)	17 (8.1%)	83 (39.7%)
2011년 5월	143	75 (52.4%)	16 (11.2%)	52 (36.4%)

출처: 김숙진,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및 대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원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11, 51면.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활동으로 조사를 받은 대상청소년들은 어떠한 사후조치를 받고 있을까? <표 7>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은 대상청소년이 어떠한 사후 조치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조사를 받은 대상청소년은 모두 209명이고 그 중에서 109명(52.2%)이 검찰로 송치되고, 17명(8.1%)는 쉼터 등 청소년지원시설에 연계되고, 83명(39.7%)는 보호자 인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매매 사범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한편, 쉼터 등에 연계되는 경우가 10% 정도, 보호자에 인계되는 경우가 40%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2011년 5월까지의 집계에서도 비슷하다. 2011년 대상청소년 단속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검찰 송치, 쉼터 등 연계, 보호자 인계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쉼터 등 시설 연계와 비교해서 보호자 인계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경우 보호시설 연계보다 보호자 연계조치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보호자 인계가 단순 귀가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호자 연계조치를 받은 대상청소년이 사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복지부에 성매매 대상청소년이 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대상청소년 명단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접수되어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치료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연계된 대상청소년의 수는 2010년의 경우 47명이다.³¹⁾ 보호자 연계조치에 포함된 대상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경찰에서 여성가족부에 대상청소년 발견 사실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서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연계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호자 연계 조치에 포함된 40~50명 가량은 아무런 사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단순 귀가 조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통보된 명단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교육불응,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 보호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규모는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 단계에서 대상청소년들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입과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검찰단계의 사법처리

경찰단계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수사가 끝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수사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이 소년보호사건

31)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명단은 2010년 53명이었는데, 검찰 송치 명단과 중복된 명단이 6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통보 명단은 47명이다(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7면).

에 상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보호 또는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즉, 검찰 단계에서 검사는 대상청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재활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상담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검찰단계에서 해당 청소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공식통계로서 파악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통계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알선·중재 등의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계처리시 각 조항별로 코드를 달리하여 입력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통계를 구할 수 없다.³²⁾ 또한 해당 청소년이 성매매 사건 외에 다른 죄가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여러 죄명이 병합해서 적용되고 통계처리시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식통계를 통해서 성매매 청소년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³³⁾ 이렇듯 검찰에 송치된 대상청소년에 대한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10%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선(2001)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직후인 2001년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자료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청소년의 4.8%만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대다수는 보호자 인계 처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³⁴⁾

그렇다면 검찰단계에서 재활교육을 위한 교육수강명령을 받은 경우는

32) 김지선,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5면 각주 36.

33) 김지선, 위의 보고서, 105면.

34) 김지선, 위의 보고서, 107면.

얼마나 될까? 2010년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대상청소년 109명 중에서 교육수강명령 통보에 따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통보’된 명단은 33명이다.³⁵⁾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소수의 대상청소년과 교육과정 통보된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대상청소년은 보호자 인계 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경찰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단계에서도 일부가 쉼터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 연계되지만, 여전히 다수의 대상청소년은 보호자 인계조치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홍봉선 남미애(2009)의 연구에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매매 청소년 144명을 대상으로 조사 후 어떠한 사후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경찰에서 자체 집계한 2010~2011.7년 통계와는 달리 쉼터와 보호시설에 인계된 경우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쉼터나 보호시설로 보내진 경우가 49명(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진 경우가 46명(31.9%), 교육기관으로 보내진 경우가 23명(16.0%), 형사 입건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가 21명(14.6%), 기타 5명(3.5%)로 나타났다.³⁶⁾ 반면에, 홍봉선 남미애(2009)는 이 연구에서 성매매 청소년 전문가 집단과의 심층면접도 행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들은 대다수의 성매매 청소년들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사후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설문조사대상자들의 다수가 쉼터나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성매매 청소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설문조사 결과의 경우 쉼터와 보호시설에 있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과다 대표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 2010년에 통보된 33명 중에는 2009년에 통보된 명단 6명을 포함하고 있다.

36) 홍봉선·남미애, 앞의 보고서, 2009, 64면.

3.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책

가. 초기수사단계에서의 조기개입의 필요

최근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성매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성매매는 어려워지는 반면, 초기 단계에서 조기개입이 이뤄질수록 탈성매매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재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조기개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지원시설 연계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사법 처리 초기 단계이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법처리 과정은 사법처리 초기단계에서의 조기개입을 어렵게 한다. 경찰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과 그에 따른 대검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 후 대상청소년을 전원 입건 조치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경찰의 초기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의적절한 개입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법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즉,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 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³⁷⁾ 한편 검사의 역할과 관련

37) 2000년 제정 당시 법률 제13조에서는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

해서는 2006년 개정된 법률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교육과정 이수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해 8월말부터 당시 국가청소년 위원회(이후 보건복지부를 거쳐 현재는 여성가족부 소관)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치료 및 재활교육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을 통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대상 청소년을 성매매 동기 및 경위, 성매매 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전원 입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대상 청소년의 성매매 동기 및 경위, 성매매 횟수 및 기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 또는 재범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소년부 송치를 하거나 송치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상담·교육과정 이수명령 처분을 결정한다. 즉, 경찰 단계에서 검찰단계를 거쳐 검사가 교육과정 이수 명령 처분을 내리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검사의 교육과정 이수 명령 처분은 다시 여성가족부로 통보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교육명령 대상자를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대상청소년과 연락이 두절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2010년의 경우 검찰에서 통보된 교육대상자 명단 33명 중에서 교육 불응이 5명이었는데, 교육 불응의 이유는 연락이 두절된 데 따른 것이다.³⁸⁾ 거기에다가 검찰의 대상청소년 사건처리지침에 따르면, 교육과정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명령불응 통보를 받은 경우 “공소권 없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개정된 법률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개정된 내용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수사와 지체 없는 검사 송치를 강조해 오고 있다.

38) 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7면.

음” 처분한 대상 청소년의 사건을 재기하여 소년부 송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⁹⁾

입건 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6개월 이상의 사법처리 기간 동안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는 지연되고, 사법처리 기간이 길어지는데 따른 새로운 문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조정되고 공식적으로 관련법에 경찰의 개입 권한을 명시하는 법 개정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도 현재 검사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보호자 인계나 쉼터 등 관련 시설 연계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는 상황인데,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시의적절한 보호조치들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피해 청소년의 상황,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불입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경찰관에게도 교육과정 이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담당경찰관에게 교육과정 이수 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몇 차례 검토되어 왔던 바이나, 관련 근거가 희박하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⁴⁰⁾ 경찰관에게도 검사에게 주어진 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명령권이 주어진다면, 사법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대상청소년과 연락이 두절되고 교육 불응에 이르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경찰관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쉼터, 청소

39) 대검찰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대상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지침(2006.9.1부터 시행), 4면.

4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실무 담당자의 인터뷰.

년피해지원시설 등 관련 시설 실무자들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사후개입과 보호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 효과적인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보완

최근 청소년 성매매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만남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면서, 성매매 당사자들의 거래는 개인간의 쪽지 등 더욱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수 성인에 대한 수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획수사’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에서의 성매매 단속방식은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구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성매수 성인을 단속하는 데도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⁴¹⁾ 경찰의 이러한 수사방식이 단속에 효과적인 것은 성매매 대상청소년이나 성매수 성인이 경찰의 단속 의지에 따라 어느 때든지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소재는 이러한 수사방식이 경우에 따라 성매매 대상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성매수 성인의 검거는 전적으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이때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단순 귀가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보호대상으로서 관련 시설에 연계되기 보다는 피해 청소년의 의사를 따라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41) 성윤숙,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제3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 52면.

경찰의 성매매 청소년 수사기간은 성매수 성인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매매 청소년이 상대한 성매수 성인의 수가 많을수록 경찰단계에서의 수사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기획수사’방식은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는 방치하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상대 성매수 성인과의 대질신문에 따른 2차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다.

구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성윤숙(2010)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성매수 성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 영장을 사후영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⁴²⁾ 사후영장제도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의 성매매를 방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2) 성윤숙, 위의 논문, 51면.

V.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시설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책

1. 지원시설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홍봉선·남미애(2009)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지원시설·위기청소년교육센터·쉼터 등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실무자들이 경찰과의 연계 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경찰단계에서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연계시키는 경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실무자), 시설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붙여넣어 시설 적응이 어렵게 하는 경우(청소년피해지원시설 실무자), 시설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성격이 다른 시설에 연계하는 경우(청소년피해지원시설 실무자) 등이다. 즉, 경찰에서 대상청소년들을 관련시설에 연계시킬 때, 시설의 성격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에 연계시킴으로써 시설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⁴³⁾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특성화된 지역센터가 있으며, 쉼터의 경우 단기쉼터와 중장기 쉼터의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쉼터에서 보호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시설에 연계하고자 할 때, 이러한 시설의 성격과 특성, 보호대상에 부합하는 연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계시설 실무자

43) 홍봉선·남미애, 앞의 보고서, 2009, 100면.

들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인적 관계망 형성이 요구되며, 청소년 성매매 수사부서 담당자들에게 연계시설의 특성과 성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연계의 강제성과 일방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사에게는 대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 이수명령 처분을 내릴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⁴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실무자들은 강제적인 교육명령이 교육센터가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제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대상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대상 청소년에게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사실 이 문제는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이다. 교육의 효과와 청소년의 권리를 고려하여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상청소년에게 이로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한편, 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이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경찰 단계에서 여성가족부에 대상청소년 발견사실을 통보하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연계시키거나 직접 연계시키는 경우, 대상청소년들의 교육 불응 비율이 높은 것은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4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검사는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제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이나 상담 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45) 홍봉선·남미애, 앞의 보고서, 2009, 100면.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쉼터나 다른 기관 연계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 고위험군 청소년이나 성매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교육불응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 대상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교육 참여를 통보받은 대상청소년의 교육 불응이 높다.

입소의 자발성 문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쉼터와 청소년피해지원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경찰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귀가 후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상청소년을 쉼터나 청소년피해지원시설로 연계시키고 있는데, 대상청소년이 쉼터나 청소년피해지원시설에 입소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퇴소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러한 시설에서도 당사자의 비자발적인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쉼터의 경우 대개는 가출청소년 생활지원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경찰의 연계에 의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비자발적인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였다가 입소가 의무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고서는 퇴소하면서 이미 시설에서 적응해 잘 지내고 있는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이들의 잦은 입소와 퇴소가 다른 가출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단계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시설 입소를 요구하기보다는 시설 입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수사담당자가 대상청소년의 자발적 시설 입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시설 입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피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협력체

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사법기관의 통보에 의한 재활교육 참여자 감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재활과 탈성매매를 위해서 재활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의 통보에 의한 교육 참여자는 감소 추세이다.⁴⁶⁾

<표 8>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통보된 교육대상 인원

구분	검찰	경찰	계
2006	4	54	58
2007	34	311*	345
2008	38	320**	358
2009	59	116	175
2010	27	53	80

출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내부자료.

* **2007년 실제 교육이수자는 104명이며, 2008년에는 100명임.

<표 8>은 2006년 이후 5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교육을 위탁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인원을 집계한

46) 교육 참여자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성매매 단속건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것이며, 성매매 청소년 단속건수(즉 발견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단속 주체인 경찰의 단속 횟수와 단속 강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특별단속, 특진, 표창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청소년 발견의 감소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성매매 단속 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검찰과 경찰에 의한 교육대상 통보 인원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7년에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각각 34명, 311명이 교육대상자로 통보되었고, 2008년에는 각각 38명과 320명이 통보되었으나, 2009년에는 59명과 116명으로 감소하고, 2010년에는 27명과 53명으로 더욱 감소하였다.⁴⁷⁾

지난 2010년의 경우에는 전국 10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중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수는 전체의 1/7 정도에 불과하다.⁴⁸⁾

최근 경찰과 검찰로부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통보되는 위탁 교육생의 절대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보된 명단 중에서 교육불응자의 비중도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10년 검찰에서 여성가족부에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이수 결정 통보'를 통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위탁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총 33명이었는데, 그중 교육 수료자는 18명, 교육 불응 5명, 교육 연기 3명, 2011년 교육 참여 예정 7명으로 집계되었다. 교육 불응한 5명은 연락이 두절된 데 따른 것이다.⁴⁹⁾

한편, 2010년 경찰에서 여성가족부에 성매매 대상청소년 발견사실을 통보하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접수된 교육대상자 명단은 총 53명이었는데⁵⁰⁾, 이 가운데 교육 이수는 17명, 교육 미이수는 35명으로 집계되

47) 2007년 검찰과 경찰로부터의 교육대상자 통보 인원이 2006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2006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 의한 교육수강명령제도가 시행되고, 대검의 수사지침에 따라 성매매 대상 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경찰의 재량권으로 불입건 조치되었던 대상청소년들이 대거 입건 조치되면서 교육대상자는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48) 2010년 전국 10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모두 37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검찰로부터 접수된 피해청소년은 27명이었고,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로 접수된 피해 청소년은 53명이다.

49) 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7면.

50) 교육대상자 명단 53명 가운데, 6명은 검찰명단과 중복되어 제외되었고 2009년에 통보되었다가 2010년에 교육에 참여한 5명이 추가되어 실제 경찰을 통한 교육대상자는 52명이었다.

었다. 미이수자 35명 중에는 연락두절이 13명, 교육거부 13명, 교육연기 1명, 학교 재학중 6명, 개인적 사유로 인한 교육 불응 등이 2명이었다.⁵¹⁾

경찰을 통한 교육대상자 중에서 미이수자가 많은 것은 검찰 명단과는 달리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의 연계로 교육과정에 참여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중에는 교육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0년 위기청소년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 372명 중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아 교육을 이수한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337명(90.6%)은 성매매 고위험군 청소년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지역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와 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상 청소년을 발굴한 결과이다.⁵²⁾

따라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재량권을 강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조정하고,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교육과정 이수 명령권을 수사담당 경찰관에게도 부여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51) 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8면.

52) 교육에 참여한 성매매 고위험군 청소년 337명 중에서 쉼터로부터 연계되어 참여한 청소년은 139명(41.2%)이고 법원 48명(14.2%), 보호관찰 6명(1.6%), 기나 144명(42.7%) 순이다. '기타'로 분류되는 144명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원스톱지원센터,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감호위탁시설 등의 청소년유관기관을 통해서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이 78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이나 아웃리치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이 23명(16.0%), 친구 소개로 참여한 청소년이 14명(9.7%), 학교에서 연계된 청소년이 10명(6.9%), 경찰로부터 연계된 청소년이 9명(6.3%), 기타 2명(1.4%)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8면).

또한 교육대상자의 감소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거래 방식이 갈수록 은밀해지고, 거래 경로가 다양화된 데서 비롯되는, 단속활동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수사환경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의 부족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시설에 시의적절하게 연계시키는 활동과 함께 구조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지원시설의 확대이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시설에 연계할 때, 시설의 특성과 성격, 피해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연계활동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관련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상황에 부합하고 시설의 성격에 맞는 연계활동이 어려워진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피해지원시설은 1년 이상의 장기시설이고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동은 거의 없다. 반면에 단기 피해지원시설은 매우 제한된 수가 운영되고 있어서 단기간 보호되어야 할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⁵³⁾ 청소년 지원시설의 상황이 그러하니, 경찰에서는 피해 청소년을 가출청소년 쉼터에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쉼터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원시설로 옮겨가기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형편이다. 경찰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마땅히 연계시킬 시설이 부족하고, 쉼터에서는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배정을 받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53) 홍봉선·남미애, 앞의 보고서, 2009, 101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현장지원체계로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지원시설, 그리고 가출청소년쉼터의 보호 가능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 40시간 교육과정에 연간 300~3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뿐이며,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연간 200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2,500명 정도 보호 가능하지만,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어서 일시적인 보호가 가능할 뿐이다. 이렇듯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현장지원시설 기반은 매우 빈약하다보니, 경찰과 검찰단계의 연계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하여도 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부족해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재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지원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필요에 부합하는 관련 시설들이 확보된 후에 비로소 서로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연계활동이 가능하다.

VI. 맺음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기 어려운 기초적인 문제제기는 과연 이들이 피해자인가 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소위 ‘비행청소년’ 혹은 일탈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른가? ‘가출청소년’들과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른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피해자라는 논리가 가출청소년, 일탈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는가? 하는 의문들이 있다. 관련 법률에서 성매매 청소년들이 피해자라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법처리 현장에서나 사회적 의식의 수준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일탈의 수준을 넘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나가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위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사회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않으면 안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규모이다. 전국적인 대규모 표본조사에서 스스로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밝힌 청소년의 규모도 만만치 않거나와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을 내포한 가출청소년 집단의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는다. 시설 실무자들은 가출청소년 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의 규모,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정부와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비롯하여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발견되고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회적 지원체계에 연계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개선책들을 모색하였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우선적 과제이다. 성매매 청소년 단속을 통해서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활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활발한 단속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초기단계에서 피해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의 역할에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검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교육수강 명령권 등이 초기 경찰단계에서도 주어지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다이버전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찰의 재량권을 높이는 방향에서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에서 피해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연계활동을 벌이고자 하여도 지원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수용공간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시설의 성격과 특성,

피해청소년의 상황에 부합하는 연계활동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원시설의 확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끝.

참고문헌

- 경찰청, 경찰백서, 2010.
- 고성혜, “청소년 성 비행의 문제점과 그 대책”, 통일로, 제8월호, 2002.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보고서(6차, 8차, 10차)(2004~2006).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
- 김숙진,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및 대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원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11.
- 김연주, 신빈곤층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자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지선,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대검찰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대상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지침. 2006.
-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부정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제3권, 2010.
- 성윤숙,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제3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
- 성윤숙·박병식,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2009.
- 신미식, 10대 여자청소년 원조교제(성매매)의 유형화와 대처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여성가족부, 2009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 2009.
-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대상청소년 위탁교육사업 결과보고서, 2010.
- 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 2010.
- 이나영, “ ‘청소년 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원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11.
홍봉선·남미애,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2009.
황순길 외,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내부자료.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책임연구보고서 2011-10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리실태와 지원시설 연계의 과제

201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